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637
----------	-------

발의연월일 : 2025. 10. 17.

발 의 자 : 김정호 · 김남희 · 허종식
이연희 · 이수진 · 서왕진
박 정 · 윤후덕 · 임미애
김용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므로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16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보유하여야 함.

그런데 개인형 이동장치는 청소년 등이 주로 대여하여 이용하는데,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할 법적 의무가 없어 무자격자의 이용을 통제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로 인해 운전자격이 없는 청소년 등이 야간에 도로를 주행하거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이용자 본인뿐만 아니라 보행자 등의 생명과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시·도경찰청장이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자격자의 개인

형 이동장치 이용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및 제160조제1항제10호·제11호 신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의무) ① 유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이용자의 운전자격(제80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운전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이용자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도경찰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시스템(이하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운전자격의 확인의 절차·방법,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0조제1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5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아니

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

11. 제5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이용자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55조의2(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사업자의 의무) ① 유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이용자의 운전자격(제80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하여야 한다.</u> <u>②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운전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이용자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u> <u>③ 시·도경찰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시스템(이하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u> <u>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운</u>

